

忠清北道 시내버스 등의 運送事業支援을爲한 登錄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2. 4. 13

內務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 出 者 : 忠清北道知事

나.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 提出日字 : 1992年 6月 8 日

· 回附日字 : 1992年 6月 8 日

다. 上程日字 : 第 79回 臨時會

· 第 1次 內務委員會 (1992. 6. 15) 上程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

2.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金 容 德)

가. 提案理由

○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一般庶民이 主로 利用하는 大衆交通 手段이 되고 있으나 急激한 自家用 自動車의 增加와 勤勞者의 賃金引上, 運送費用의 急增等으로 因한 經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버스運送事業에 對한 稅制支援으로 大衆交通의 保護와 서비스 向上을 圖謀코자함.

나. 主要骨子

- 免除對象 : 시내버스 運送事業 및 시외버스 運送事業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登錄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鄭 天 憲)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는 一般庶民이 主로 利用하는 大衆交通 手段이 되고
있으나, 自家用 自動車の 急激한 增加로 利用하는 乘客이 繼續 減少趨勢에
있으며,
運輸業體 從事者の 過重한 賃金引上 要求等 運送費用의 急增으로 運輸
業體가 經營難에 逢着하고있어 運輸事業에 對한 稅制支援으로 零細 大衆
交通業體를 保護하고 서비스를 向上시킴으로서 住民의 生活便益을 圖謀
코자, 內務部에서 示達된 準則에 依據 忠淸北道 시내버스 등의 運送事業
支援을 爲한 登錄稅 課稅免除에 關한 條例를 制定하는 것으로서
本 條例案은 妥當하다고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해당사항없음

5. 討 論 要 旨 : 해당사항없음

6. 審 查 結 果 : 도 원안대로 의결 (참석 8, 찬성 8)

7. 少數意見要旨 : 해당사항없음

8. 其他必要한 事項 : 해당사항없음

9. 審査報告書 添附書類

忠淸北道 시내 버스 등의 運送事業支援을 爲한 登錄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案)